

<제6차>

이사회 회의록

< 2010. 4. 26(월) >

한국장학재단

제6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① 회의일시 : 2010년 4월 26일(월) 11:00 ~ 13:30
- ② 회의장소 :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(24층)
- ③ 출석임원 : 10명
 - 이사장 이경숙
 - 이 사 김춘선, 김은섭, 김규옥(당연직 代. 김병규 교육과학예산과장),
이기봉(당연직 代. 강병삼 학생학부모지원과장), 김명환, 문태현,
이현봉, 천세영
 - 감 사 홍동현
- ④ 불참임원 : 3명
 - 이 사 정해룡, 홍규덕, 홍영만
- ⑤ 상정안건
 - 보고안건(1건)
 - 제6-1호 20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보고
 - 의결안건(6건)
 - 제6-1호 2010년 인재육성 지원사업 계획(안)
 - 제6-2호 정관 개정(안)
 - 제6-3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(안)
 - 제6-4호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
 - 제6-5호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(안)
 - 제6-6호 2010년 기관장 경영계획서(안)
- ⑥ 소관부서 : 경영기획실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

□ 전차회의록 보고

① 보고안건 제6-1호 : 2010년 1학기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보고

① 안건 주요내용

- 채권발행
 - 목적 : '10년 1학기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
 - 일시 : '10년 1~12월
 - 방법 : 국가보증 고정 또는 변동 금리부 등록채권
 - 상환조건 : 10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
- 은행 단기차입
 - CP할인(유통CP발행 아님)대출 또는 일반대출로 3개월 이내 차입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발언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보고안건 접수

② 의결안건 제6-1호 : 2010년 인재육성 지원사업 계획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배경 및 목적
 - 성장 단계별, 분야별 통합적 인재육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섬김의 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함양한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
- 전략 목표
 - 학생 특성별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/운영

- 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채널 재원 조성
- 학생활동 지원체계 구축
- 추진방향
 - 글로벌인재 육성에 필요한 Global HR Network를 활용하여, 멘토링, 사회봉사, 인턴십, 해외유학, 학생복지, 기금조성 사업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학재단 고유의 차별화된 인재육성 지원 체계를 구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사업이 진행되려면 멘토들이 멘티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
- 전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선발할 예정이며, 멘토가 분야를 결정하고 지원자가 원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. 멘티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할 예정임. 5월 중 발대식 때 적절한 멘토링 방법, 멘토 분야 등 상세 내용을 가이드 할 예정임
- 멘토가 될 분이 자기의 전문성, 가치관 등을 포함하여 멘티에게 먼저 제시한 후 멘티가 지원하고 재단은 중개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
- 재단에서는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 바람
- 재단은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학자금지원 전문기관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, 미션으로는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 기여를 채택하였음.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인재를 되기 위한 중개기관이 없었음. 재단에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및 장학사업도 중요함
- 장학재단에서 특화된 사업을 찾아내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. 멘토링, 지식봉사는 괜찮은 아이디어임
- 멘토링, 지식봉사는 좋은 아이디어임. 멘티 대상자는 주요 대학 재학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사람, 취업에 어려운 사람들 등에 멘토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

③ 논의 결론

- 기재부, 교과부와 협의·수정을 전제로 의결

③ 의결안건 제6-2호 : 정관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배경 및 목적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제2항의 개정 내용 중 재단이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됨에 따라 임명권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

- 주요내용

직 위	임 명 절 차(현행)	임 명 절 차(개정안)
이사장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교과부장관 임명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교육기술부장관 제청 →대통령임명
감사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기재부 운영위 심의·의결 →기재부장관 임명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기재부 운영위 심의·의결 →기재부장관 제청 →대통령임명
비상임 이사	교과부장관 임명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교과부장관 임명

- 그 외 일부 문구 수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발언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④ 의결안건 제6-3호 :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) 제2항의 개정예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절차 변경 및 기간 변경

직 위	임 명 절 차(현행)	임 명 절 차(개정안)
이사장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교과부장관 임명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교육기술부장관 제청 →대통령임명
감사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기재부 운영위 심의·의결 →기재부장관 임명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기재부 운영위 심의·의결 →기재부장관 제청 →대통령임명
비상임 이사	교과부장관 임명	임추위 추천(복수) →교과부장관 임명

- 임원추천위원회 업무 중 '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' 추가
-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기간 '2주'에서 '1주'로 수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발언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⑤ 의결안건 제6-4호 :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업무성과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기반으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

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

-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반을 둔 기존 실행 예산을 사업계획,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분류·편성하고자 함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현재 내용은 기재부 등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정한 내용임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⑥ 의결안건 제6-5호 : 한국장학재단 중기 경영목표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배경 및 목적
 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(경영목표의 수립) 제2항에 의거 재단의 공공기관 지정 후 3개월 이내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,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
- 주요내용
 - 설립 초기 사업안정화와 재단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전략목표 설정
 - 전략목표는 3대 사업전략(학자금대출, 장학, 인재육성)과 1대 전사 기능전략으로 수립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재단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. 기숙사 사업의 경우 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 중에 있음. 사학진흥재단이 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람
- 대학 멘토링 사업을 4개 대학에서 향후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. 대학이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함. 인재육성지원 안건과 이번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계해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

필요함

- 재단은 장학금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고자 고민하였음

③ 논의 결론

- 일부 내용 수정을 전제로 의결

㉞ 의결안건 제6-6호 : 2010년 기관장 경영계획서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배경 및 목적
 - 기관장 경영계획서를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주요현안과제의 성과지표를 검토함
 - ⇒ 주요현안과제에 대해 이사회 논의 후 경영계획서 확정
- 주요내용
 - 경영효율화, 노사관계선진화, 기관고유과제 등으로 경영계획서 구성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안건 진행에 앞서 제6호 안건 “기관장 경영계획서(안)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(기관장과의 계약 등)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정관 제13조(임원의 직무)에 따라 전무이사가 진행(이사장 퇴장)
-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지표를 설정하였음. 대출, 장학금, 인재육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으며, 달성 가능한 지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
- 본 안건은 원안 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- (이사장입장) 폐회선언. 끝.